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강화 등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676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7. 12.
3. 회부연월일 : 2024. 7.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없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없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 7. (생략) <u><신설></u>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9조(결격사유 등)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제1호에 따라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제3호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제4호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⑤ 교습자나 개인과외교습자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에 해

현행	개정안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당하면 그 신고의 수리는 효력을 잃는다.
1. ~ 10. (생략)	제17조(행정처분) ① ----- ----- ----- ----- -----.
<신설>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을 학원에 취업시킨 경우(강사나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11. · 12. (생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2¹⁾는 입학사정관제를 대학이 학생선발²⁾³⁾ 시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성적 외에 「초·중등교육법」

1)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 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모집 시기에 따라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되는데, 수시모집 기간에는 주로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이 운영되며, 정시모집 기간에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이 대체로 운영됨.

< 표준 대입전형 체계 >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⁴⁾,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등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두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음.

입학사정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법률에서는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회피·배제 제도, 그리고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및 입시상담 전문업체 취업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⁵⁾,

전형 유형	주요 전형요소
학생부 위주	· (학생부종합) 교과·비교과
논술 위주	· (학생부교과) 교과 중심
실기/실적 위주	· 논술(대학별고사) 등
수능 위주	· 실기 등
	·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 * 학생부위주 전형유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는 전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학생부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
 - 학생부종합 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 (자료: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대교협)

3)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퇴직 입학사정관의 학원 등 취업 제한의 경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학원 외에도 교습소 및 과외교습 등을 통한 입시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등 진출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한편(학원의 설립·운영, 교습소의 설립·운영, 개인과의 교습), 학원에게는 퇴직 입학사정관을 학원에 취업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방안(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을 정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학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

첫째,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계약직 입학사정관을 중심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 제한이 가중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⁶⁾ 등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즉, 입학사정관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 제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⁷⁾이 있고,

이에 반해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퇴직 후 취업 등 제한 대상에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과외교습을 허용하는 경우 학원에 대한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채용사정관의 30% 가량이 계약직인 상황에서 취업제한 강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자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바⁸⁾, 개정안

6)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pp.26, 2024. 5.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 과잉금지원칙의 검토사항으로 ①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한가?(목적의 정당성) ②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으면서 그 목적달성에 도움이 되는가?(방법의 적절성) ③입법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 중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가장 작은 방법인가?(피해의 최소화) ④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균형이 유지되는가?(법익의 균형성)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7) 동일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113554호)」에 대한 의견조회(서울대, 가톨릭대)

8) 입학사정관, 처우개선·전문직화 노력 선행돼야, e-대학저널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57>)

이 입법화되는 경우 대학의 해당 전형(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입학사정관 현황 ('24년 대학정보공시) >

(단위:명)

구분		총원(명)	정규직(명)
전임사정관(A)	채용사정관	976	676(69.3%)
	교수사정관	166	158(95.2%)
	전환사정관	117	115(98.3%)
	소계	1,259	-
위촉사정관(B)	내부, 외부	8,082	-
총계		9,523	
·채용사정관: 대학이 전임으로 채용한 입학사정관 ·교수사정관: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고 상시 학생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대학이 입학사정관 보직을 부여해 책임시수를 감면하고 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교수 ·전환사정관: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위하여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사람 ·위촉사정관: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총장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하며, 내부위촉사정관과 외부위촉사정관으로 구분됨.			

(자료: 대학알리미, 185개교 기준)

셋째,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을 정지하도록 하는 제제방안을 신설하는 안 제17조제10의2호는 현재 학원이 취업제한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그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넷째,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법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 시행 후 퇴직한 입학사정관부터 신법을 적용하려는 적용례와 법 시행 전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관하여는 신뢰보호 등을 위해 종전의 규정에 따

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 개정안 부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입학사정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원 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한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포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포 후 시행까지 국민이나 시행기관에게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려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일은 개정 당시의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음.

다만, 동 개정안의 경우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없고, 기존의 의무부과 규정의 미비한 점(행위태양 보완, 제재방안 신설)을 보완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은 과도하게 긴 것으로 판단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⁹⁾¹⁰⁾.

9)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인 경우 일정기간 시행일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기존의 의무부과에 대해서 별칙을 규정하며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참고로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문 의 처
02) 6788-5193

므로 입법정책적인 판단으로 즉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헌법」 제53조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pp.821~829, 2024.5.

“공포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하위법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6개월, 부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3개월을 두는 사례가 많다. 한편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3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중 략… 법률의 제·개정에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두는 경우 적시성을 놓쳐서 법률의 제·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